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3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한정애 · 추미애 · 박홍근
이학영 · 서영석 · 박지원
김 윤 · 조인철 · 박희승
정준호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관리·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
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한다.

6의5.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
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4. (생 략)	1. ~ 6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5. 「동물보호법」에서 금지</u> <u>하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해당</u> <u>하는 내용의 정보</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u>제6호의4</u> 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② ----- ----- ----- <u>제6호의5</u> ----- ----- ----- ----- ----- ----- ----- ----- -----.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